



제 목 | 건강검진결과보고 기간

건강검진결과보고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검진기관에서 서류가 넘어오지 않아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정확히 언제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규정에 의해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 받은 경우
 2.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건강진단기관은 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진결과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사업주는 지체없이 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검진 후 30일 이내에 검진결과표를 송부 받은 후 바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건강진단은 별도의 지방노동관서의 요청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제 목 | 안전관리자 인원 축소 여부

당 현장은 아파트 시공 현장으로 사업승인을 별도로 받아 1단지(약1,140억), 2단지(약183억)로 나뉘어져 있으나, 1단지와 2단지는 오히려 하나 사이 정도로 인접해 있으며 동일 공사조직에 의해 공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개의 사업장이 아닌 동일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 할 수 있으며, 당현장도 2명을 선임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300여 명, 공사기간은 2000.3 ~ 2000.5으로 현재 공사종료 전 15%기간에 해당됩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당 현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을 적용하여 공사종료전 15%를 적용하여 안전관리자 1명을 축소 가능한지 여부
2. 안전관리자 인원축소 관련하여 김리단에서는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겠다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 또 다른 관련법이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에 따라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자 3년 이상인 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상기사항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1단지(약1,140억)공사의 경우만 해당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에 해당된다면 별표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자 3년 이상인 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2단지(약183억) 공사의 경우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 현장의 경우는 통합 관리하여도 2명, 별도 관리하여도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제 목 | 협력회사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

시공사에 1,000원의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있고 협력사에 100원의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배정하였는데 협력사에서 사용하다보니 150원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저희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협력사에서 올라온 150원을 발주처에 안전관리비를 청구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공사차공사 협력사에서 보고한 안전관리비 100원보다 추가 지급하였기 때문에 협력사 안전관리비 50원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수 없고 삭제후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시공사에서 보고하는 안전관리비 청구시 합산하여 청구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08.10.22 고시 제2008-67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규정에 의거 해당항목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도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목 | 방수콘센트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고자 건설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에 항목중 근로자의 전기감전을 방지하고자 사용되어지는 전선콘센트 보호용 방수콘센트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품목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규정에 의거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

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한다.

-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습한 지역에서의 근로자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수 및 방우기능이 있는 콘센트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안전

제 목 |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승인 가능여부

시골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 2~3곳의 집을 방문하여 요양보호를 해야 합니다. 시골의 특성상 버스도 없고 마을과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기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동합니다. 아침에 첫 번째 할머니집을 방문하던 중 집 앞에서 자동차와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모르니 입원을 하라고 했으나, 수혜자 할머니들도 걱정되고 별 문제 있겠나 싶어 그냥 통원하기로 맘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갈수록 너무 심하게 아픈게, 조금 심각하던 생각이들어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입원 후에도 정도가 심해 CT촬영을 해봤는데 흉추 뼈가 3개나 골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 같은 경우 업무수행을 위해 출근을 하던 중 사고가 났는데, 산재승인이 가능한가요.



1. 산재법상 출퇴근 재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규정으로 가사업무가 제공한 차량 2) 출퇴근차량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부분에 해당되어야만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질의하신 사항으로만 판단해 보면, 비록 본인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였으나, 그 이동하는 방법 및 경로가 대중교통 내지 도로로 이동할 만한 사항이 아니기에, 그러한 근무환경에 대해 증명을 하시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

노동부(www.molab.go.kr)전자민원창구